2026년 「해외 수요 기반 의류 제품 국내 개발·생산 지원」 수혜기업 모집 공고

한국패션협회는 2026년도 「의류제조 혁신기반조성 사업」의 일환으로 **해외 오더 수주 확대 및 해외 판매 의류제품의 국내 생산을 통한 국내 제조기업 일감 창출과 기반 강화**를 위해 2026년「해외 수요 기반 의류 제품 국내 개발·생산 지원」사업의 수혜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6년 5월 20일
한국패션협회장

1. 지원 개요

□ **지원목적**

ㅇ 국내 생산 기반을 활용하여 **해외 수요 기반 의류 제품*의 개발·생산** 지원을 통해 수출 확대 및 국내 의류 제조 산업 활성화 도모

* 본 사업에서 지원하는 의류 제품은「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(KSIC)」기준 C14에 해당하는 품목 중 착용을 목적으로 하는 의복 제품에 한정하며, 가방, 신발, 모자, 액세서리 등 비의류 잡화 품목은 제외함

□ **주최·주관** : 산업통상부·한국패션협회

□ **지원금액** : 기업당 최대 700만 원 이내(민간부담금 : 국고지원금 = 2 : 1)

□ **지원규모** : **10개사** 내외 (※예산 및 신청 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)

□ **지원기간** : 2026년 공고일 ~ 2026년 11월 30일

□ **지원내용 : A, B 2개 유형 중 택1**

ㅇ **(유형 A) 해외 오더 수주용 시제품 국내 개발 + 국내 생산** 비용 지원

* 단발성 샘플 제작이 아닌, 후속 생산 또는 추가 오더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 우대

ㅇ **(유형 B) 해외 판매용 의류 제품의 국내 개발 + 국내 생산** 비용 지원

- 개발 : 원부자재 구입비, 패턴 개발비, 샘플 제작비 등 시제품(Sample) 개발비
- 생산 : 재단, 봉제, 프린팅/자수, 후가공(마감/다림) 등 생산 임가공비

※ 광고·홍보비, 국내/해외출장비, 수수료, 인건비, 교통·운송비, 회의비 등 개발·생산 이외의 간접비 지원 불가

2. 지원대상

※ 본 사업은 해외 수출 및 판매용 제품의 국내 개발·생산 촉진과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 방지를 위해 지원대상을 다음과 같이 제한함

ㅇ **("유형 A" 의 경우) 해외 오더 수주용 의류의 국내 개발과 국내 생산 증진을 목적**으로 **해외 바이어를 대상**으로 기획·개발·생산을 대행하는 **국내 프로모션 기업**(B2B 수주)

ㅇ **("유형 B" 의 경우) 국내 제조기업에서 생산된 의류의 해외 판매를 추진하는 국내 기업**

※ 유형 A는 해외 바이어 오더 수주를 기반으로 국내 생산을 연계하는 사업이며, 유형 B는 자체 기획 제품의 해외 판매를 목적으로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임(유형 A, B 중복 지원 불가)

□ **지원대상 및 자격요건**

ㅇ **(유형 A)**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일 것

① 국내 프로모션 기업(의류 기획·생산·납품 대행)일 것 ② 해외 오더 수주를 위해 해외 바이어 대상 세일즈(영업) 활동을 기획·추진할 것 ③ 이를 위해 시제품(Sample) 개발 및 수주 제품 생산을 전량 국내에서 수행할 것

- 지원 신청기업은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증빙하기 위하여, **사업 참여 신청서(양식)와 함께 다음의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**하여야 함
  - 사업자등록증
  - 해외 바이어 거래 실적 증빙자료
  - 거래(예정)처인 국내 시제품 개발기업 및 제품 생산기업 목록 등

※ 유의사항 : 정부 지원금을 활용하여 해외 수주 전시회 참가를 통해 오더 수주를 추진하는 패션 브랜드의 경우,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 수혜에 해당하므로 "유형 A" 에 신청할 수 없음

ㅇ **(유형 B)**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일 것

① 국내 기업(자체 기획 제품의 해외 유통·판매 목적)일 것 ② 해외 온·오프라인 판매를 위한 세일즈(영업) 활동을 기획·추진할 것 ③ 이를 위해 제품 생산을 전량 국내에서 수행할 것

- 지원 신청기업은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증빙하기 위하여, **사업 참여 신청서(양식)와 함께 다음의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**하여야 함
  - 사업자등록증
  - 해외 판매 또는 세일즈(영업) 실적
  - 당해 연도 해외 판매(세일즈) 추진 세부 계획
  - 거래(예정)처인 국내 제품 생산기업 목록 등

□ **지원금액 및 유의사항**

ㅇ 지원금액 : 기업당 최대 700만 원 한도

ㅇ 지원조건 : (민간부담금 : 국고지원금) = (2 : 1) 비율 적용

- 선정된 기업은 신청한 국고지원금의 최소 2배 이상을 민간부담금(자부담)으로 투입해야 하며, 해당 금액은 시제품 개발 및 국내 임가공 생산 비용에 전부 사용해야 함

▪ (예시1) 국고지원금 700만 원 신청 시 → 민간부담금 최소 1,400만 원 이상 부담
→ 총 사업비 2,100만 원

▪ (예시2) 국고지원금 500만 원 신청 시 → 민간부담금 최소 1,000만 원 이상 부담
→ 총 사업비 1,500만 원

※ 유의사항 : 민간부담금이 국고지원금의 2배에 미달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

□ **정산 방법 및 절차**

ㅇ 선정기업은 **지원 기간 내 발생한 개발·생산 비용 선집행** → '26년 10월/11월까지 결과 및 정산 증빙자료 제출 → 검토 후 **지원금 사후 지급**(11월/12월)

< 정산 절차 >

- **[사업 수행 및 집행]** 선정기업 대상 협약 체결 후 계획에 따라 시제품 개발 빛 생산 진행
- **[결과 보고서, 증빙자료 제출]** 제출 기한 내 결과 보고서 및 정산 증빙자료 제출
- **[기관 검수]** 협회 또는 외부 협력사를 통한 서류 및 국내 생산 현장 실사(필요시)
- **[지원금 확정 및 지급]** 불인정 금액 제외 후 지원금 입금

* 불인정 : 정산 불가 항목인 경우, 해외 개발·생산인 경우, 증빙자료 미제출 등

	정산시기		제출기한		지원금 정산
1차	공고일 ~ '26. 10. 16	→	10월 16일까지 제출	→	11월 초 지급
2차	공고일 ~ '26. 11. 30		11월 30일까지 제출		12월 초 지급

[정산 가능 / 불가 항목]

항목	세부내용
정산 가능	원부자재 구입비, 패턴 개발비, 샘플 제작비, 생산 임가공비 등 개발/생산 항목
정산 불가	운송비, 출장비, 수수료, 인건비 등 개발/생산 이외의 간접비

ㅇ **거래 및 집행 원칙**

- 선정기업은 사업 종료 후 지원금 정산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일괄 제출하여야 함
- 거래 시 수취인은 계약서, 견적서 등 증빙서류에 명시된 개발·생산 기업(인)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(실제 수행 기업 외 계좌로의 지급은 인정되지 않음)

[정산시 제출 서류]

구분	유형 A	유형 B
결과(정산) 보고	▪ 정산/실적보고서 작성 제출(양식) - 시제품 국내 개발 결과 - 해외 바이어 대상 세일즈 추진 실적 - 수주 오더 실적(인보이스/수출신고필증) - 수주 오더 국내 생산 실적	▪ 정산/실적보고서 작성 제출(양식) - 시제품 국내 개발 결과 - 판매용 제품 국내 생산 실적 - 해외 판매 실적(인보이스/판매 데이터 등 별첨 파일로 제출)
정산 증빙 제출 서류	▪ 정산/실적보고서(양식) ▪ 거래 내역 증빙 - 계약서 또는 발주서 - 거래명세서 - 세금계산서 -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▪ 자금 흐름 증빙 - 통장 사본 - 입금(이체) 확인 증빙서류	

* 간이영수증 및 수기 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음
* 세금계산서에는 품명이 간략하게 기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, 원단 수량, 단가, 공정별 비용 등이 명시된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
* 임가공비 정산 시 협력업체의 사업장 소재지가 국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, 해당 집행 금액은 인정하지 않음
* 모든 지출은 계좌이체 등 객관적인 금융거래 확인이 가능한 방식으로 집행하여야 하며, 관련 증빙이 미비한 경우 해당 금액은 정산에서 제외될 수 있음

3. 평가 및 선정

□ **평가방법**

ㅇ **(1차) 서면평가, (2차) 발표평가**

- 서면평가 : 지원자격 적합 여부 및 제출서류 검토 및 평가(사무국)
- 발표평가 : 5인 이상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한 발표평가

ㅇ 발표 및 질의응답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선정

- **발표평가 대상 기업은 발표자료**(신청서 또는 PT 요약자료 등 자유 양식 활용)**를 활용하여 20분 발표를 하고, 이후 10분간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**하는 순서로 진행

o 평가기준 및 선정방법

- 전략 및 경쟁력, 실행 계획, 계획 역량, 예산 투입 계획 등 기준에 따라 종합 평가
- 발표평가 점수 평균 70점 이상 기업 중 **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**

※ 동점 발생 시 가점항목 높은 순, 가점항목까지 동일시 평가항목의 '사업 수행 역량 및 의지'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

□ 평가기준표

구 분	평가요소	세부 평가내용
평가항목 (100점)	**수주·판매 전략** (30점)	· 시장 분석의 정확성(타겟 시장 및 고객 니즈 파악) · 전략의 차별성(우위성 있는 구체적 수주 및 판매 전략) · 영업망 확보(유통 채널 및 영업 네트워크 구축)
	실행 계획의 타당성 (30점)	· 추진 계획의 현실성(추진 일정의 체계, 실현가능성) · 예산 편성의 적정성(산출 근거의 명확성 및 타당성) · 리스크 관리(리스크 예측 및 대응방안의 적정성)
	사업 수행 역량 및 의지 (20점)	· 기업 및 인력 전문성(수행 전담인력의 경력 및 전문 역량) · 투자 의지(민간부담금 확보 방안, 재무 안정성)
	기대효과 및 성장가능성 (20점)	· 성과지표의 구체성(수주액, 매출액의 객관적, 구체적) · 지속가능성(지원 종료 후에도 지속가능 모델 여부)
가점(5점) (해당 시)	해외 수출/판매 실적	· 해외 수출 또는 판매 실적 보유 여부 (수출신고필증, 인보이스, 구매주문서, 외화 입금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)

4. 추진 절차 및 일정

□ 추진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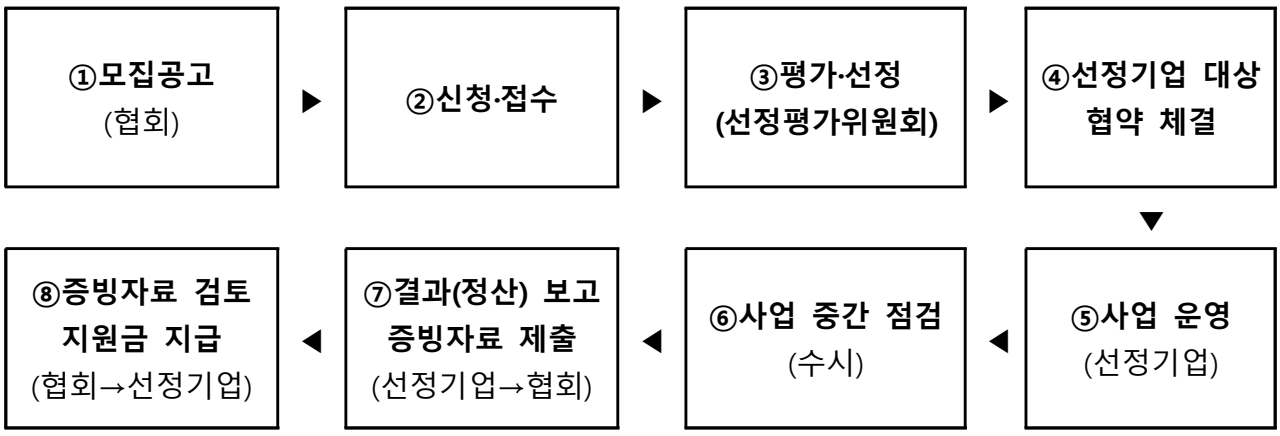

※ 세부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, 각 단계별로 별도 안내 예정

5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□ 신청기간 : 2026년 5월 20(수) ~ 6월 12일(금) 17:00 마감

□ **신청 방법 : 이메일 접수** (신청양식 작성 및 첨부서류 이메일 제출)

- 협회 홈페이지(www.koreafashion.org)를 통해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
-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준비 후 이메일 첨부 제출(mfg@koreafashion.org)

□ **제출서류 ※ 접수 시 아래 첨부서류 일괄 제출**

* 필수서류 미제출 시 심사 제외, 외부기관 발급 서류는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해 인정
* 제출서류는 1개의 ZIP 압축파일로 업로드(15MB 이하)

제출서류		비고
필수	① **신청서(양식)**	·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
	② **사업자등록증**	· 스캔본 제출 ·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
	③ **국세, 지방세 완납 증명서**	
임의	① **수출실적 증빙 :** 수출실적증명원* *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 ② **매출실적 증빙 :**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③ **의류 생산설비 자체 보유 증빙자료** ④ **국내 의류 제조기업 협업 생산 증빙** ⑤ **홍보자료**	· 수출/매출 실적은 최근 2개년도 증빙 자료(스캔본 제출) · 생산설비 보유 증빙 : 설비명, 수량 기재 및 사진 · 국내 의류 제조기업 협업 생산 증빙은 업체 발행 매입 세금계산서(국세청 발행 엑셀 리스트) · 홍보자료 : 기업소개서, 수출/판매 주요 제품(의류) 사진

* 수출 및 매출 실적 증빙은 최근 2개년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
* 국내 의류 제조기업과의 협업 생산 증빙은 국내 생산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발행처 및 거래내용이 명확히 기재된 자료로 제출하여야 함
* 제출서류는 평가 시 정량 및 정성평가 자료로 활용되며, 평가 후 반환하지 않고 폐기함

□ 문의처

한국패션협회 사업3부 정다운 과장, 박정현 사원
(이메일) mfg@koreafashion.org (전화) 02-528-0119 / 0116

6. 유의사항

지원 제외 대상

◈ 휴·폐업 기업

◈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

◈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,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
* 단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 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가능

◈ 정부 지침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(또는 기업)

.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

. 징역, 금고의 형 등 형사처분 이력이 있는 자

. 산업재해·공정거래·임금체불 관련 위반사항이 있는 자

. 기업 및 대표자가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

◈ 기타 사회적 물의 유발 등으로 정부 지원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

공 통

◈ 정부 지원금 중복 수혜 불가

. 동 지원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타 정부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중복 수혜한 경우,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

◈ 지원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참가를 포기할 경우, 차 순위 업체 지원함

◈ 사업 기획, 결과에 수반하는 정보(매출 현황, 수상 이력 등)를 협회와 공유하여 효과적 사업 운영 및 후속 지원을 위해 적극 협조 요망

◈ 동 사업 참여를 통한 결과는 보고자료 및 홍보물로 이용될 수 있음